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74

발의연월일: 2024. 7. 10.

발 의 자: 한정애·이학영·조인철

박수현 • 이기헌 • 서삼석

박희승 • 이재강 • 송옥주

허 영·장철민·서영교

위성곤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수품의 제조·수리 등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 대여를 약정하거나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란 중인 국가에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장비나 탄약 등을 대여·양도할 경우 무기 등을 대여·양도한 국가의 상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국회가 통제할 권한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미국의 경우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따라 대통령은 무기 수출 등 반출 시에는 의무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이에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무기를 대여 · 양도하는 경우 국

방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우리 군수품의 사용이 국제 외교·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대여·양도에 대한 국회 동의) 국방부장관은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에 게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장비 및 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수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회의 동의를 얻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
- 2.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을 해외파견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여·양도에 대한 국회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군수품의 제조 등 계약으로 군수품

의 대여 또는 양도를 약정한 경우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5조의2(대여·양도에 대한 국
	회 동의) 국방부장관은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
	나 내전이 발생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에게 인명을 살상
	하는 전투장비 및 탄약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여
	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국회의 동의를 얻어 안전보
	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
	<u>가 또는 국가 외의 자</u>
	2.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을
	해외파견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